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78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578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7.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6년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대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별그림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위탁대상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별그림어린이집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위탁기간	2026. 11. 1. ~ 2031. 10. 31.(5년)		
위탁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위탁체	장혜진	홍도현	오은하
현원/정원	19명/20명	13명/20명	18명/20명
교직원	9명 (원장 1, 보육교사 7, 조리원 1)	5명 (원장 1, 보육교사 3, 조리원 1)	8명 (원장 1, 보육교사 6, 조리원 1)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류옥화)

- 본 동의안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임차 전환으로 최종 선정되었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별그림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별그림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 위탁 및 건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전세권 설정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 간 위 탁 (신 규 위 탁) 동 의 안

의안 번호	4578
----------	------

제 출 년 월 일 : 2026. 7. 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2026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별그림어린이집(가정)이 교육부로부터 최종 선정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나.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17조(운영관리)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의회동의)
다. 추진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함.
라. 위탁사무의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위탁시설의 개요

어린이집 명칭	위탁체	소재지		원장	시설규모 (면적)	정원 (현원)	개원 예정일
		행정동					
별그림 어린이집	홍도현 (개인)	둔산동	서구 둔산남로 30,105동 108호 (둔산동, 녹원아파트)	홍도현	지상1층 (84.6㎡)	13명 (20명)	2026. 11월

바. 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사.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9항,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전적격 및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후 대전광역시 및 교육부 최종심의·선정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별첨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조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별첨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17조(운영관리)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의회동의)

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첨

등록번호	아동복지과 -31920
등록일자	2026. 7. 8.
결재일자	2026. 7. 8.
공개구분	비공개(5,6)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6. 7. 8.
최정선	서정란	김충희	안명옥	최동규	전문학
협 조 자	기획예산과장 이경 조직평가팀장 성지은 예산팀장 강재형				

-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추진개요

- (위탁시설)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 (위탁기간) 개원일로부터 5년
- (운 영 체) 기존 운영자
- (위탁범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연 1,330,197천원(예상) / 보육료, 인건비 등



주 민 복 지 국
아동복지과 / 보육지원

-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 ❖ 2026년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정된 민들레와강아지똥·별그림·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제16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17조(운영관리)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9224호(2026. 6. 12.)
“2026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심의결과 통보”

II 어린이집 일반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 2026. 6월말)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어린이집 수	788	106	97	254	246	85
국공립 수	182	40	35	41	38	28
비율 (%)	23	37.7	36	16.1	15.4	32.9

○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단위: 개소 / 2026. 6월말)

구분	계	2019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실적	41	10	1	3	5	9	3	3	7
비고	신규20 전환21	신규10	신규1	신규1 전환2	신규1 전환4	신규3 전환6	전환3	전환3	신규4 전환3

III

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대표 및 원장	정원/현원	연면적	비고
1	민들레와강아지똥	관저동로90번길 47, 1111동 104호 (관저동, 느리울마을1단지)	장혜진	20명/19명	84.9㎡	가정→ 국공립
2	별 그 림	둔산남로 30, 105동 108호 (둔산동, 녹원아파트)	홍도현	20명/13명	84.6㎡	
3	연 두 아 이 누 리	계룡로686번길 18, 102동 103호 (용문동, 라베리아아파트1단지)	오은하	20명/18명	84.9㎡	

IV

추진사항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사업 대상 선정	○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심사	2026. 4. 29.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	2026. 4. 29.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최종 선정	2026. 6. 12	교육부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수립	2026. 7.	
	○ 서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6. 7.	예정
	○ 어린이집 건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및 전세권 설정	2026. 8.	예정
	○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2026. 10.	예정
시설 공사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기자재(교구, 집기 등) 구입	2026. 9. ~ 2026. 10.	예정
개원	○ 기존 인가 어린이집 폐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등록·개원	2026. 11.	예정

○ 설치예산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재원비율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480,000	240,000	165,000	75,000	—	
장기임차 보증금	300,000	150,000	105,000	45,000	국비50%, 시비35% 구비15%	개소당 100,000천원
리모델링비	150,000	75,000	52,500	22,500		개소당 50,000천원
기자재비	30,000	15,000	7,500	7,500	국비50% 시비25% 구비25%	개소당 10,000천원

※ 2026년 본예산 1개소 예산 기 반영, 2개소 추가 반영 필요(구비 추가소요 50,000천원)

V 민간위탁 개요

1 위탁개요

위탁대상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별그림어린이집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위탁기간	2026. 11. 1. ~ 2031. 10. 31.(5년)		
위탁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위탁체	장혜진	홍도현	오은하
현원/정원	19명/20명	13명/20명	18명/20명
교직원	9명 (원장1, 보육교사7, 조리원1)	5명 (원장1, 보육교사3, 조리원1)	8명 (원장1, 보육교사6, 조리원1)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2] 소요예산(예산액)

○ 세입예산액: 1,330,197천 원(국 528,064천원, 시 273,136천원, 구 109,255천원, 보육료 등 419,74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산출기초(원)	예산액
계		414,664
보육료	0세: 584,000원×4명×12월=28,032,000원 1세: 515,000원×10명×12월=61,800,000원 2세: 426,000원×6명×12월=30,672,000원 야간연장: 4,000원×3명×12월×40시간=5,760,000원	126,264
수익자 부담수입	특별활동비: 24,000원×16명×12월=4,608,000원 기타필요경비: 5,050,000원	9,658
보조금 및 지원금	원장: 3,838,400원×1명×12월×80%=36,848,640원 보육교사: 2,480,820×5명×12월×80%≐119,079,480원 보조교사: 1,139,000원×2명×12월=27,336,000원 조리사: 2,231,100원×1명×12월=26,773,200원 대체교사지원: 99,880원×20회=1,997,600원 아침돌봄수당: 14,008원×20일×12월=3,361,92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35,505,790원 반별운영비: 150,000원×5반×12월=9,000,000원 연장보육료: 15,360,000원 급간식비: 2,500,000원 냉난방비: 570,000원 도서구입비: 130,000원 잡수입: 280,000원	278,742 (국비58% 시비30% 구비12%)

구 분	별그림어린이집	
	산출기초(원)	예산액
계		429,657
보육료	0세: 584,000원×8명×12월=56,064,000원 1세: 515,000원×5명×12월=30,900,000원 2세: 426,000원×7명×12월=35,784,000원	122,748
수익자 부담수입	특별활동비 - 60,000원×10명×12월=7,200,000원 - 60,000원×2명×8월=960,000원 기타필요경비: 8,260,000원	16,420
보조금 및 지원금	원장: 3,514,900원×1명×12월×80%=33,743,040원 보육교사: 2,494,250×6명×12월×80%=143,668,800원 보조교사: 1,139,000원×2명×12월=27,336,000원 조리사: 2,241,900원×1명×12월=26,902,800원 아침돌봄수당: 14,008원×20일×6월=1,680,96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39,592,580원 반별운영비: 150,000원×6반×12월=10,800,000원 연장보육료: 2,160,000원 급간식비: 2,500,000원 교재교구비: 1,000,000원 냉난방비: 570,000원 도서구입비: 130,000원 잡수입: 405,000원	290,489 (국비58% 시비30% 구비12%)

구 분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산출기초(원)	예산액
계		485,876
보육료	0세: 584,000원×6명×12월=42,048,000원 1세: 515,000원×6명×12월=37,080,000원 2세: 426,000원×8명×12월=40,896,000원 야간연장: 4,000원×3명×12월×30시간=4,320,000원	124,344
수익자 부담수입	특별활동비: 39,000원×16명×12월=7,488,000원 기타필요경비: 12,820,000원	20,308
보조금 및 지원금	원장: 3,853,275원×1명×12월×80%=36,991,440원 보육교사: 2,716,720원×5명×12월×80%≒130,402,560원 비담임교사: 2,446,000원×1명×12월=29,352,000원 0세전용교사: 2,791,770원×1명×12월=33,501,240원 보조교사: 1,139,000원×2명×12월=27,336,000원 조리사: 2,231,000원×1명×12월=26,773,20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37,677,867원 반별운영비: 150,000원×4반×12월=7,200,000원 연장보육료: 6,480,000원 0세전용 지원금: 1,200,000원 급간식비: 2,400,000원 교재교구비: 1,000,000원 냉난방비: 570,000원 도서구입비: 130,000원 잡수입: 210,000원	341,224 (국비58% 시비30% 구비12%)

○ 세출예상액: 1,330,197천 원(국 528,064천원, 시 273,136천원, 구 109,255천원, 기관부담 419,742천원)

(단위 : 천 원)

구 분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산출기초(원)	예산액
계		414,664
인건비	원장인건비:3,838,400원×1명×12월=46,060,800원 보육교사: 2,480,820원×5명×12월=148,849,700원 보조교사: 1,139,000원×2명×12월=27,336,000원 조리사: 2,231,100원×1명×12월=26,773,200원 대체교사지원: 99,880원×20회=1,997,600원 수당(명절수당,휴가수당, 스승의날수당 등): 12,182,00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49,315,000원	312,514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7,00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900,000원 여비: 150,000원 복리후생비: 3,640,000원 업무추진비: 5,960,000원	35,654
보육활동비	교직원 연수,연구비: 1,800,000원 교재교구비: 11,160,000원 행사비(졸업 및 수료, 오리엔테이션, 기타행사 등): 9,100,000원 영유아 복리비: 안전관리 30,000원×20명×1회=600,000원 영아급간식비: 3,200원×20명×250일=16,000,000원 교직원급간식비: 3,200원×9명×250일=7,200,000원	45,860
수익자 부담경비	특별활동비: 24,000원×16명×12월=4,608,000원 기타필요경비: 5,050,000원	9,658
재산조성비	시설비(개보수 등): 5,800,000원 자산취득비: 3,500,000원	9,300
예비비	예비비: 1,678,000원	1,678

구 분	별그림어린이집	
	산출기초(원)	예산액
계		429,657
인건비	원장인건비: 3,514,900원×1명×12월=42,178,800원 보육교사: 2,494,250×6명×12월=179,586,000원 보조교사: 1,139,000원×2명×12월=27,336,000원 조리사: 2,241,900원×1명×12월=26,902,800원 수당(명절수당,휴가수당, 스승의날수당 등): 15,703,08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5,704,513원	347,411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7,563,2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72,000원 여비: 25,000원 복리후생비: 3,500,000원 업무추진비: 10,100,000원	26,060
보육활동비	교직원 연수,연구비: 1,083,000원 교재교구비: 7,130,000원 행사비(졸업 및 수료, 오리엔테이션, 기타행사 등): 5,250,000원 영아급간식비: 3,000원×20명×250일=15,000,000원 교직원급간식비: 3,000원×10명×250일=7,500,000원	35,963
수익자 부담경비	특별활동비 - 60,000원×10명×12월=7,200,000원 - 60,000원×2명×8월=960,000원 기타필요경비: 8,260,000원	16,420
재산조성비	시설비(개보수 등): 1,000,000원 자산취득비: 1,500,000원	2,500
예비비	예비비: 1,303,000원	1,303

구 분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산출기초(원)	예산액
계		485,876
인건비	원장: 3,853,275원×1명×12월=46,239,300원 보육교사: 2,716,720원×5명×12월=163,003,200원 0세전용교사: 2,791,770원×1명×12월=33,501,240원 비담임교사: 2,446,000원×1명×12월=29,352,000원 보조교사: 1,139,000원×2명×12월=27,336,000원 조리사: 2,231,000원×1명×12월=26,773,200원 수당(명절수당, 휴가수당, 스승의날수당 등): 14,400,000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64,665,075원	405,27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6,348,4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510,000원 여비: 60,000원 복리후생비: 3,210,000원 업무추진비: 8,110,000원	22,238
보육활동비	교직원 연수, 연구비: 2,172,000원 교재교구비: 8,320,000원 행사비(졸업 및 수료, 오리엔테이션, 기타행사 등): 3,200,000원 영유아 복리비: 심리검사 10,000원×20명×1회=200,000원 영아급간식비: 2,800원×20명×21일×12개월=14,112,000원 교직원급간식비: 2,800원×10명×21일×12개월=7,056,000원	35,060
수익자 부담경비	특별활동비: 39,000원×16명×12월=7,488,000원 기타필요경비: 12,820,000원	20,308
재산조성비	시설비(개보수 등): 1,500,000원 자산취득비: 1,000,000원	2,500
예비비	예비비: 500,000원	500

VI 향후계획

- 2026. 7.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 2026. 8. 어린이집건물 무상사용계약 및 전세권 설정
- 2026. 9. ~ 10.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2026. 10.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
- 2026. 11. 기존 민간어린이집 폐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민간위탁 동의안 각 1부. 끝.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28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2023. 8. 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8., 일부개정]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28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4. 6. 27.>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2. 6. 22., 2024. 6. 27.>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시행 2025. 4. 9.]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194호, 2025. 4. 9.,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아동복지과), 042-288-3230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8.10.8.>

1.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단지 지역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목개정 2013.12.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30.>]

제17조(운영관리) 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2021.7.30.>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30.>]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12. 28.,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기획조정실), 042-288-2340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